



##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 출입국·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시행 2018.5.15.] [법무부령 제927  
호, 2018.5.15., 일괄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공항·광주·창원·전주·춘천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적법 시행규칙」 등 5건의 법무부령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5.15.] [대통령령 제28880  
호, 2018.5.15.,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특별전형을 통하여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으로 하고, 매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수의 100분의 7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 2018.5.15.] [대통령령 제28890호, 2018.5.1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통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 동안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며,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으로서 감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간 징계기준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의 경우 징계감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출석통지서에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시행 2018.5.15.] [대통령령 제28891호, 2018.5.1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고충처리 제도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위원으로만 구성하였던 고충심사위원회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고충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청구인을 출석하도록 하였으나, 고충심사 청구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청구인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고충심사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의 결정 종류를 시정 요청, 제도 또는 정책의 개선 권고 등으로 세분화하고,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시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18.5.10.] [행정안전부령 제58호, 2018.5.10.,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기준을 다른 직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오던 것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전문직위 근무 시 특정직위 가산점 부여(안 제16조 제3항, 제24조 제4항 신설)  
종전에는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경력평정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직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직위 근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함.

나.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 폐지(안 제24조 제1항)

- 1)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특수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도 이를 특수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2) 이에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국가공무원으로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

다. 필수보직기간 변경에 따른 가산점 부여 기준 조정(안 제24조 제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모든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이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는 사회복지업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직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8.5.9.] [총리령 제1460호, 2018.5.9.,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의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계리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인 법인에서 종사한 경력을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 경력으로 포함시키고, 제2차 시험 과목 중 60점 이상

특정한 과목의 점수를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텡스(TEPS)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텡스의 점수체계 변경에 따라 625점에서 340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18.5.8.] [대통령령 제28869호, 2018.5.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補職)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5.8.] [대통령령 제28866호, 2018.5.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군·구 단위로만 할 수 있어 읍·면·동 지역의 경우 자연재난으로 집중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읍·면·동이 속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는 한 국고의 추가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앞으로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집중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집중피해 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8.9.] [대통령령 제28872호, 2018.5.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재 손 및 팔에 대한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이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 및 팔을 이식대상 장기에 포함하여 손 및 팔의 이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심장 및 폐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 및 팔을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제2조)

- 1) 손 및 팔은 실제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2) 이식 대상 장기에 뼈·피부·근육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 및 팔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나.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확대(제27조)

손 및 팔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피부색, 성별, 장기 크기 등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심장 및 폐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별표 5 제2호다목)

- 1) 현행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중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나이 또는 체중의 차이 등 이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 기증자와 이식대기자가 같은 권역에 있는지 여부, 혈액형이 같은지 여부, 이식대기자의 대기기간 등에 따라 심장 및 폐의 이식대상자가 선정되도록 개선함.
- 2) 심장 또는 폐 중 어느 하나만을 이식 받으려는 이식대기자가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받으려는 이식대기자보다 응급도가 높거나 같은 경우에 심장 또는 폐 중 어느 하나만을 이식받으려는 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운영하고 있어 동시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이식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실정인바, 응급도가 같은 경우라도 심장만을 이식 받으려는 이식대기자가 없고, 폐만을 이식받으려는 이식대기자 중에 최고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받으려는 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기준을 개선함.

###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8.5.8.] [대통령령 제28878호, 2018.5.8.,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 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 종전에는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5.2.] [법무부령 제923호, 2018.5.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보호장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포승은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장비에서 제외하고 일반포승의 사용방법과 재질 등을 개선한 벨트형포승을 보호장비의 하나로 도입하는 한편, 머리보호장비의 재질을 폴리우레탄으로 변경하고 환기구멍의 크기를 3센티미터로 변경하여 머리보호장비의 환기성을 높이는 등 보호장비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8.5.2.] [행정안전부령 제56호, 2018.5.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각종 용어와 인사발령 관련 서식을 국가공무원 인사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62호, 2018.5.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8861호, 2018.5.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같음 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같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체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15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 금액을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5로 조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48호, 2018.4.30.,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16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위반횟의 금액비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및 심판정에서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54호, 2018.4.30.,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에 민영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3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주택 우선 공급의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일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

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47호, 2018.4.3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물품의 제조·판매 등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소비자피해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015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와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긴급회의의 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조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 운영방안 마련(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신설)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 인증 신청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도안, 규격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와 관련된 인증·평가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긴급회의의 운영(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사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2) 긴급회의의 참석대상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대책 수립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종합대책이 수립된 후에는 세부계획을 즉시 수립·이행한 후 이행상황 및 결과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사법보좌관규칙

[시행 2018.7.1.] [대법원규칙 제2784호, 2018.4.27.,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5152호, 2017. 12. 12.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함(제2조 제1항 제18호 신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제4항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민법 제836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와 관련된 사무를 제외함)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함(제2조제1항제19호 신설)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가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도록 함(제4조 제4항)

- 법관이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은 즉시항고로 보게 되어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제4조 제6항 제6호)

####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8.1.] [대법원규칙 제2787호, 2018.4.27.,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대한 등기사항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도 공시함으로써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제도를 활성화하고 거래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도록 변경함(제20조 제2항)
- 등기사항의 개요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인·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기록

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증명서의 종류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변경함(제23조 제1항 제4호)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함(현행 제23조 제2항 삭제)
- 집행관에 대한 특별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3조 제3항 삭제)
- 등기사항증명서의 증명사항에 해당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도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함(제25조 제3항)

###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5.8.] [대법원규칙 제2788호, 2018.4.27.,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 전자출생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5152호, 2017. 12. 12.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아니한 규정 일부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제10조의 식별부호 사용승인(해지) 신청은 식별부호사용승인(해지)에 관한 기록에 편철해야 하고, 제11조의 기록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에 해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의 편철 대상에서 제외함(제15조)
-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규정된 전자카드식공무원증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정보 대상자를 특정하여 신고사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분증명서에서 제외함(제32조 제2항)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제1항 제5호 신설)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작성자에 사법보좌관을 추가함(제78조 제2항)
- 법 제96조에 따른 허가사건 명칭을 ‘창성 창본 허가’에서 현재 법령상 용어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로 통일함(제87조 제1항 제1호)

###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